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2016. 8.

관 세 청

순서

1. 제도개요	1
2. 「기본발급」 · 「원칙적 발급 제한 대상」	1
3. 「발급제한」 세부 운영지침	3
4. 「발급제한 예외」 세부 운영지침	5
5. 행정사항	8
< 참고 > 개정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1

1 제도개요

- (시행 근거)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이라 함)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13.7.26.시행)
- (취지)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이후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성실신고 유도

2 「기본 발급」 ·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

1 기본 발급대상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수입자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법 §35 ② 1 및 시행령 §72 ②)

가.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관세법§28②)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 ① 관세법(§33)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 ② 수입물품의 운임, 보험료가 수입신고시 확정되지 않는 경우
- ③ 수입물품의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 ④ 수입물품의 구매수수료, 수입후 발생비용 등 공제금액이 수입신고이후 확정되는 경우
- ⑤ 수입물품 특별할인분 과세여부에 대한 과세가격사전심사(관세법 §37)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
- ⑥ 특수관계자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ACVA)에 대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결과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나. 관세법상 **보정**(관세법 §38의2①·②, (+)계산서 발행), **수정**(관세법 §38의3①, (+)계산서 발행), **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②,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 **보정통지(안내)**를 받아 **보정신청**하는 경우 및 기업상담전문관(AM)의 정보제공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
- **세관장으로부터 보정통지(안내)**를 받고 **통지받은 보정대상 수입 신고건 이외의 건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발급 대상 <신 설>**
- **사전세액심사기간**(관세조사부서 조사포함) 중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보정신청**하는 경우 **발급 대상**

다. **후발적 경정청구**(관세법 §38의3③)의 경우 [(-)계산서 발행]

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관세법 §38의4①)의 경우 [(±)계산서 발행]

마. 관세를 **환급**(관세법 §46)하거나, **과다환급금을 다시 징수**(관세법 §47)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

바. **계약상이 환급**(관세법 §106)의 경우 [(-)계산서 발행]

②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

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나.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① 관세 조사,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3 원칙적 발급제한의 예외

위 '2 원칙적 발급제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 발급 (부가세법 '§35 ② 2 가.~나.' 및 동법 시행령 '§72 ④ 1.~3.')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다.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라.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된 경우
- 마.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3 「발급제한(법 §35②2, 영 §72③)」 세부 운영지침

1 세관장이 증액경정(관세법 §38의3④)하는 경우

- 수입자가 세관장의 보정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여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포함
- 확정가격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법§28④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확정하는 경우 포함

②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통지 등을 받고 수정 신고하는 경우

* 관세조사는 심사부서에서 실시하는 ‘정기 법인심사’, ‘수시 기획심사’ 의미

- 관세조사 통지시점은 「관세법」에 따른 ‘사전통지서’ 도달시점
－ 관세조사 시작 전 통지에 따른 도달시점(관세법 §114)
-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관세범칙조사’의 경우, 관세조사 착수 후 수입자가 최초로 범칙조사 사실을 알게 된 때*를 통지 시점으로 간주

* 임의 현장방문, 압수수색 개시, 출석요구 경우 등 중 빠른 때

③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 해당 예시 >

- ㉠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후 실시하는 ‘건별 세액심사’에 따라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하는 경우
- ㉡ AEO기업에 대해 ‘종합심사’는 현장심사 개시하는 경우
- ㉢ 관세조사·범칙조사 의뢰(예: 사전세액심사건)에 따라 세액탈루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하는 경우

< ‘현지출장 또는 확인업무에 착수’ 非해당 예시 >

- ㉠ 통관부서에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
- ㉡ 납세심사부서에서 납세자의 ‘보정·수정·경정청구’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경우
- ㉢ 납세심사부서에서 보정기간 경과 전 실시하는 ‘건별세액심사(보정심사)’를 위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하고, 수입자가 보정신청하는 경우

④ 위 '2'·'3'과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조사부서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환검사' 착수를 위해 사전검사통지를 한 경우
- FTA부서에서 실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검증)' 착수를 위해 통지를 한 경우

4 「발급제한 예외(법 §35②2, 영 §72④)」 세부 운영지침

①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 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기존 관세청장 등이 결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 나.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 분류 결과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청장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신 설>
- 다. 수입자가 관세를 신고할 때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증명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품목분류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품목분류를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증명하는 경우

< 증명자료의 보관·비치 판단 기준 예시 >

다음의 자료를 보관·비치하고, 과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 ㉠ 해당 물품 설명자료
- ㉡ 해당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설명자료
 - 해당 품목분류를 적용하게 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품목분류 및 그 대안을 선택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등

< 합리적 판단 기준 예시 >

- ㉠ 수집된 과거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들이 대표성 있는 자료여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특정 품목분류 사례, 기준이 누락되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지 아니하였을 것
- ㉡ 수집된 품목분류 사례, 기준 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품목 분류를 적용하였을 것

※ 단,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품목분류는 제외

②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단순 납세자 정정에 한함)

③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증명서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 협정 및 법령에 따라, 수입자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제출된 사실과 일치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았음을 수입자가 증명하는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허위의 원산지증명서 등)으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경우 또는 다음의 수입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자 귀책사유' 예시 >

- 수입자가 협정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발급 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운송원칙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협정 또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위반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 * 형식적 요건: 기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서식, 거래자, 발급권자, 서명, 인장, 기재요령 등

④ 단순 착오로 확인되는 경우

가. 세관에 수입신고시 제출한 부속서류(Invoice, B/L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수입신고서를 착오로 잘못 작성한 것이 확인된 경우

* 단, 첨부서류 자체를 잘못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8조(재수출감면세)에 따라 수입시에는 기한내 재수출 의사를 갖고 신고하였으나, 수입자가 수입이후 착오로 ‘재수출기간 도과 수출’ 또는 ‘기한내 용도의 사용 신청 누락’하여 세관장이 면제·감면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신 설>

* 단, 부정감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㉔ 기타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 하였으나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재경정 하는 경우

나. 사전세액심사 사안*에 대하여 수정·경정하는 경우

－ 세관장 등이 인정한 감면규정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의 재해석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

* 해당 사전세액심사 사안이 아닌 타 사유로 추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허위 서류 제출·증명 등에 의한 경우에는 배제

다.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동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관세청장이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하여 기존의 결정을 변경한 경우 <신 설>

라. 불복 및 소송 등*의 결과,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발급 <신 설>

* 「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같은 법 제11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포함

마.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최초 경정처분하였으나 조세심판원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에 재경정(관세령§34⑤)하는 경우

바. 기타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 상기 ① ~ ⑤에 해당하더라도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는 경우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

5 행정 사항

□ 동 제도 시행 사항을 납세자 등에 적극 홍보

○ 특히, 관세조사 통지 이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 세관장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납세자에게 통지한 관세조사·범칙조사, 보정심사 사안 등은 반드시 ‘전자통관시스템(징수)’에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처리

① 발급제한 대상업체 사전조치 요령

○ 조치부서 : 관세조사·범칙조사 등 발생부서(관리자 결재)

○ 등록처 : 전자통관시스템>>징수>>제세/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발급제한업체등록

○ 등록대상 : 납세자에게 통지한 관세조사·범칙조사, 보정심사* 내역

* 보정기간 이후 납세자에게 건별심사를 위해 ‘자료제출요구’한 경우에 한정

○ 등록시점 : 관세조사통지일(도달기준) 또는 범칙조사 착수일*에 등록

* 범칙조사의 경우 관세포탈(부정환금, 부정감면 포함)사건에 한하며, 납세자가 인지하는 시점(압수수색 당일 등)에 등록

— 범칙사건 착수단서가 밀수, 지재권 등 위반 건인 경우 조사과정에서의 세액탈루 사실 확인시 등록

○ 등록내용 :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사유, 수입기간, 수입신고서(전체 or 선택)

☞ 해당조사 종결 후(최종 세액정정 완료) 등록내역 삭제조치. 종합심사는 수정신고일 또는 관세조사 의뢰에 따른 관세조사 종결 후 등록 삭제

② 발급제한업체 수정신고時 등록부서의 최종확인 프로세스 준수

- 확인대상 : 발급제한 등록업체의 수정신고서(접수시 “미발급” 표시)
- 처리절차 :
 - ◆ [수입자]수정신고 ⇨ <접수> ⇨ [납세심사부서]요건심사 후 “미발급”수정 신고서에 대한 확인의뢰(시스템) ⇨ <등록부서 확인대상 ‘미결’ 생성> ⇨ [등록부서] 1차확인(부서원) → 결재(관리자) ⇨ [납세심사부서]수정신고서 최종결재·수리 ⇨ [수입자]납부 ⇨ [납세심사부서]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미발급(시스템)
- ※ 제한등록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에 대한 수정신고서 처리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절차는 종전과 동일

③ 경정·추징 등록時 발급제한 요령

- 조치부서 : 관세조사·범칙조사 등 발생부서
- 조치내용 : 경정·추징 건별등록 시 납세자 귀책사유 등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발급·미발급” 여부를 직접 선택
- ※ 경정·추징등록시 입력된 “발급·미발급” 상태의 변경은 “고지취소”절차로 가능하나 제척기간, 가산세와 연동되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필요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제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본부세관 ‘심사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기업심사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등 위원회에 상정하여 귀책사유 여부 등에 대해 심의
- ※ 범칙조사·FTA원산지 검증·통관국 소관업무는 본청 해당 업무국에서 심의·판단

< 심사처분심의위원회 >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0조)

- 기업심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행정처분을 위해 추징, 행정조치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본부세관에 설치·운영*
- * 본부세관별 월 1~2회 개최

○ 구성

- 위원장 : 본부세관 심사국장
- 위 원 : 6인 이내(심사·통관·조사·감사분야 전문가 그룹)

○ 심의사항

- 추징, 행정조치 등 심사결과 처분의 타당성 여부
- 품목분류협의회 등 상급 협의회 상정 여부
-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여부
-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의뢰 또는 관계기관 통보 여부
- 처분논리와 증거의 보완 필요성, 처분위원회 재상정 기한 등 구체적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제한 등에 관한 판단
- 심사처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등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p> <p>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p>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6.2.17.></p> <p>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제2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4.2.21.></p>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하는 경우</p> <p>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 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p> <p>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p> <p>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3.7.26.]</p>	<p>③ 법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p>④ 법 제35조제2항제2호다목에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4.2.21.>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 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p>⑤ 세관장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p>
부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p>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p>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p>	<p>수 또는 환급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최초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일 등을 덧붙여 적은 후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